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8
----------	-----

2019. 7. 23.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05. 이향숙 의원 등 13명

나. 상정의결

-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19. 7. 18.)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대표발의자 이향숙 의원 )

- 강남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나.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원 )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2조(정의)
  - 제1호의 “생활소음·진동”의 정의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sup>1)</sup>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음
  - 제2호의 “비산먼지”의 정의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sup>2)</sup>로 규정하였음
  - 제3호의 “특정공사장”의 정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sup>3)</sup>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으로 규정하였음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제4호의 “특별관리공사장”의 정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에 따른 신고대상사업<sup>4)</sup>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으로 규정한 바, 10배 이상으로 규정한 사유 설명이 필요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관리하고,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해 민관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사업자의 책무)는 사업자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제1항은 구청장이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의 공사장에 대해 수시로 생활소음·진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sup>5)</sup>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음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 (제57조 관련)

발 생 사 업	신 고 대 상 사 업
5. 건 설 업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기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騒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 안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는 구청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의2<sup>6)</sup>에 따라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공사시행자가 스스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소음을 감소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의 기준 설정 사유의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안 제7조(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제한)는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의 생활진동·소음이 규제기준<sup>7)</sup>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계·장비<sup>8)</sup>를 2개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한 바, 2개로 특정한 사유의 설명도 요구됨

- 안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sup>9)</sup>에 근거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사업자에게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의 우선포장, 청소 실시, 전담요원의 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내용 설명과 함께, 환경부 훈령<sup>10)</sup>과의 연계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해 보임

6)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7)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별지 1 참조)

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별표 9 (별지 2 참조)

9)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0)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6조(특별관리공사장 먼지저감 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는 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업자에게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사업자에게 특별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포장토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 및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장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 인·허가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환경관련부서와 인·허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안 제9조(지도·점검)는 구청장이 저감대책 의무 불이행, 일정시간대의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하는 행위, 주택가 등에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지도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구청장과 협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관이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어 보이나, 협약의 주요 내용 등의 부가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그간 비산먼지 측정현황, 소음·진동관련 민원 현황, 공사장 현황 등의 현황 설명과 함께, 그간 집행부의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운영계획(시행방안) 및 소요예산(인원)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이에, 본 조례 제정은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sup>11)</sup>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자치단체의 유사 조례 제정현황<sup>12)</sup>’ 등을 감안하면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다만, 생활소음 및 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감 실행 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의 의의 등과 연계한 논의는 필요해 보임

11) 「소음·진동 관리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2) 조례제정현황(2019년 6월 18일 현재)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초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별표 8] <개정 2010.6.30>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크·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크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시 간 대 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대상 지역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 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 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 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한다.

[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향타기·향발기 또는 향타향발기(압입식 향타향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크(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 의: 소음 측정에 관한 현재 규정은 어떠하며, 주민들이 소음측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 답 변: 민원이 들어오면 1시간 이내로 현장 방문하여 민원 발생 거리 1m 간격 거리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공사장 같은 경우는 65 데시벨 이상이 나와야 하고, 저녁에는 50 데시벨, 아침 이전에는 60 데시벨 정도 나와야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질 의: 학교 인접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답 변: 현재 공사장이 260개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토록 조치함

- 질 의: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대상이 타 자치구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사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던데 우리 구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답 변: 현재 방침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이향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
----------	-----

발의연월일 : 2019. 7. 5.

발 의 자 : 이향숙·이재진·이호귀·  
김세준·최남일·김진홍·  
허주연·김현정·박다미·  
안지연·이상애·김광삼·  
허순임(이상13인)

### 1. 제안이유

강남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및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제한) ①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를 동시에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계·장비의 사용 제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특정공사장으로 신고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관계법령】

###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